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7

# 대 전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8구합1017 취득세부과등처분취소 |
| 원 고 | [redacted] A |
| 피 고 | [redacted]시장 |
| 변 론 종 결 | 2019. 4. 10. |
| 판 결 선 고 | 2019. 5. 22.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207,350원, 지방교육세 1,677,430원, 농어촌특별세 83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7

가. 원고는 조경공사 및 조경수 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 세종특별자치시 B 목장용지 1,769㎡ 및 그 지상 523.25㎡의 축사와 72㎡의 퇴비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23. 소속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위 각 건물이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902.6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19,207,350원, 지방교육세 1,677,430원, 농어촌특별세 838,71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21,723,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여러 종류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각 건물을 묘목, 퇴비, 농기계 등의 임시 저장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7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7, 9호증, 을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용도를 토지 1,174㎡는 콩, 배추, 무,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활용하고, 각 건물 중 축사는 농가관리사로 변경하고, 퇴비사는 철거한다는 내용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던 점, ② [redacted]시 C면 공무원이 2017. 3.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할 당시 위의 축사 건물은 비어있어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고, 또한 [redacted]시 공무원이 2017.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각 건물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계량기 등은 완전히 해체가 되어 있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손수레가 1대만 있고 일부 공간에 농업용으로 볼 수 없는 책상, 의자 등이 적치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퇴비사는 지붕의 일부가 파손되고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 중이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 12.경에 이르러 그 중 토지의 일부에 조경수 묘목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농업용 창고를 직접적인 목적이 필요한 시기, 즉 수목식재, 시비(비료)작업 등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묘목식재의 특성상 이 사건 토지 정도의 규모(535평)라면 총 식재공사기간은 4일 정도로 식재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이다. 이와 같이 소규모 농장의 농업용 창고란 시비(비료)작업 기간 동안의 비료보관 또는 매실과 같이 과실을 잠시 동안 보관하는 일시적, 한시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 며칠 동안만 조경수 식재작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7

을 위한 비료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만으로 앞의 각 건물을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쟁점부동산만이고, 원고가 조경수를 식재하였다는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재학

판사 최현정